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2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5. 25.
4. 회부일자 : 2021. 5. 31.

II.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주차장 급지체제 개편 내용과 개정된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과 다자녀 가정 등에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독립유공자, 의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
3. 5·18민주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과 같은 감면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자에 대하여 동등한 예우를 함

Ⅲ. 주요내용

1. 정기주차 적용 범위 확대(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2. 금지 개정(5개 금지 → 3개 금지)

- “개별지점” 단위 5개 금지 →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금지
-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서울특별시 금지 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
- (신설)주차장 요금은 해당 금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

3. 감면 규정 폐지(승용차요일제)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면 혜택이 종료

4. 감면 규정 신설

- 의상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감면 규정 신설(80% 감면)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50% 감면 사항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8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여 동등하게 예우함
- 참전유공자·병역명문가 감면 규정 신설(50% 감면)

5. 감면 규정 정비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기존의 30% 감면에서,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로 개정
- 5·18민주유공자 감면 규정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동등한 예우를 함

6. 관련 법령 조항 상세 명시 및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정비(법령의 명확화)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조례안 [별첨 7]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 「주차장법」 제5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안 [별첨 2])

3. 협의: 해당기관 없음

4.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입법예고(2021. 4. 14.~5. 4.) 및 재입법예고(2021. 5. 17.~5. 24.):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조례안 [별첨 3])
 - ※ 입법예고 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참전유공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사항을 반영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조례안 [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조례안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원안 동의 조례안([별첨 6])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427호로 제출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주차장 금지체제 개편 내용과 개정된 감면 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부설주차장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정기주차 적용 범위를 현행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으로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 금지체제가 개별지점 단위 5개 금지에서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금지 체계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며, 주차장 요금 산정에 ‘공시지가 변수’를 적용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으로, 부설주차장 사용료의 현실화 및 형평성 확보와 감면 대상자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급지변경 및 사용료에 공시지가 변수 적용(조례안 [별표])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따라¹⁾ 기존 지역별, 기능별로 구분한 5급지 체계를 지하철역

1)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반경을 기준으로 한 3급지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산정 기본식으로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눈 값을 4제곱근으로 한 공시지가 변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먼저 주차장 급지와 관련해서 3급지 체계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지하철역 중심의 급지체계를 조성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만들려는 것으로²⁾ 이를 반영할 경우 교육청의 부설주차장 급지는 [표1]와 같이 변경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이용 시 다소간의 요금 등락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교육청에서는 사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주차장 사용료 변경에 대한 공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9.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구체적인 급지 개정 내용은 [붙임] 참고

[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운영 급지 변경에 따른 요금

연번	기관명	급지		주차요금(5분당)			개별공시지가	
		개정 전	개정 후	급지 요금	공시지가 변수	주차요금 (예상)	법정동	공시지가(원)
1	서울특별시교육청	1	2	250	1.0	250	신문로2가	7,189,683
2	과학전시관	3	3	150	0.9	135	봉천동	9,146,049
3	교육연구정보원	3	3	150	1.1	165	회현동1가	3,477,480
4	교육연수원	3	3	150	1.0	150	방배동	6,196,960
5	유아교육진흥원	면제	면제	250	0.8	200	사직동	3,217,173
6	학생체육관	2	1	400	1.0	400	잠실동	7,513,597
7	고덕평생학습관	3	3	150	0.7	105	고덕동	1,914,359
8	노원평생학습관	2	2	250	0.7	175	중계동	1,999,378
9	마포평생학습관	2	2	250	1.1	275	서교동	8,489,266
10	영등포평생학습관	3	3	150	0.8	120	당산동	2,395,045
11	강동도서관	3	3	150	0.9	135	길동	4,224,173
12	강서도서관	5	3	150	0.9	135	등촌동	3,539,462
13	강남도서관	1	3	150	1.2	180	삼성동	12,526,180
14	개포도서관	3	3	150	0.9	135	개포동	4,343,052
15	고척도서관	면제	면제	150	0.8	120	고척동	2,560,039
16	구로도서관	3	3	150	0.8	120	구로동	2,860,289
17	남산도서관	2	3	150	0.9	135	후암동	4,159,443
18	도봉도서관	2	3	150	0.8	120	쌍문동	2,037,909
19	동작도서관	2	1	400	0.9	360	노량진동	4,707,597
20	서대문도서관	3	3	150	0.8	120	연희동	2,488,347
21	송파도서관	1	2	250	0.9	225	오금동	4,862,681
22	양천도서관	3	3	150	0.9	135	목동	3,556,436
23	어린이도서관	3	2	250	0.8	200	사직동	3,217,173
24	용산도서관	2	3	150	0.9	135	후암동	4,159,443
25	정독도서관	3	2	250	1.0	250	화동	5,671,285
26	동부교육지원청	면제	면제	150	0.8	120	전농동	3,172,748
27	서부교육지원청	면제	면제	400	1.1	440	대현동	10,468,474
28	남부교육지원청	면제	면제	400	0.9	360	문래동3가	4,213,858
29	북부교육지원청	면제	면제	400	0.8	320	창동	2,493,359
30	중부교육지원청	1	1	400	1.0	400	효제동	7,108,055
31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면제	면제	150	1.0	150	잠실동	7,513,597
3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면제	면제	150	0.8	120	신월동	2,474,981
33	강남서초교육지원청	1	3	150	1.2	180	삼성동	12,526,180
34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면제	면제	250	0.8	200	상도동	3,127,907
35	성동광진교육지원청	2	2	250	0.9	225	행당동	3,759,154
36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면제	면제	250	0.8	200	미아동	2,686,237

※ 주차 요금은 해당 급지 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개별 기관의 실정에 따라 면제 또는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평균공시지가 6,439,284원)

○ 다음으로 주차장 사용료의 공시지가 변수 적용과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사용료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려는 것은 부설주차장의 급지기준이 환승역 중심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별 요금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지역별 요금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바,³⁾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이에 대한 요금편차를 보완하기 위해 ‘공시지가 변수’를 반영함으로써 공시지가의 극단적 차이가 급격한 요금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역 형평성을 요금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도 금번 개정조례안에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급지 변경에 따라 동일한 사용료 산정식을 도입하였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요금 산정 기본식]

<p>• 주차요금산정 기본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text{주차 요금}_{(A, B)} = (\text{기본 요금}_{A\text{급지}}) \times (\text{지가변수}_{B\text{법정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요금_(A, B) : B 법정동 내 A급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요금 • 기본 요금_{A급지} : A급지의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 (A=1급지, 2급지, 3급지) • 지가 변수_{B법정동} : $\sqrt{\frac{(B\text{동 평균공시지가})}{(서울시 평균공시지가)}}$ --- (B=서울시내 법정동) 	<p><공시지가 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눈 값을 4제곱근 한 것 • 적용기간 : 매년 변동되는 공시지가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5년 단위로 주차요금 산정
--	---

3)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6.12) : 각 행정동별 지가 변수 산출

행정동	평균	지가변수
서울시 전체	₩ 2,964,906	1.00
상위 5개 행정동	명동2가	₩ 37,989,452 / 12.81
	충무로1가	₩ 33,332,368 / 11.24
	명동1가	₩ 29,520,068 / 9.96
	종로2가	₩ 27,178,445 / 9.17
	충무로2가	₩ 22,047,804 / 7.44
하위 5개 행정동	개화동	₩ 328,119 / 0.11
	양평동	₩ 295,000 / 0.10
	오쇠동	₩ 215,723 / 0.07
	과해동	₩ 181,415 / 0.06
	오곡동	₩ 167,184 / 0.06

2)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확대(조례안 [별표] <비고> 6.)

○ 금번 개정조례안은 [별표] <비고> “6.”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표2] 서울특별시 대비 감면율 상향 조정 대상자

감면규정	교육청 개정 감면비율	서울시 감면비율	자치구				
			강남	서초	마포부설	종로	도봉
5·18민주유공자	80%	50%(1시간 면제)	80	80	80	50	50
보훈보상대상자	80%	50%	50	없음	80	없음	없음
참전유공자	50%	20%(신설)	80	80	80	없음	없음
병역명문가	50%	20%(신설)	없음	20	없음	50	50

○ 이 중 서울특별시와 대비하여 감면율이 상향되어 반영된 대상자는 [표 2]와 같은바, 이는 다른 감면 대상자 및 동 대상자의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의 감면율 등을 비교하여 동 대상자에게 그에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⁴⁾

4) ①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도서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과 차별에 대한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던 사례 등을 반영하여, 5·18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감면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80% 감면 비율로 상향 조정됨 → 5·18민주유공자 80% 감면: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부설주차장)
 ② 참전유공자 및 병역명문가 감면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신설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대부분이 중복되며 병역명문가는 법률이 아닌 조례에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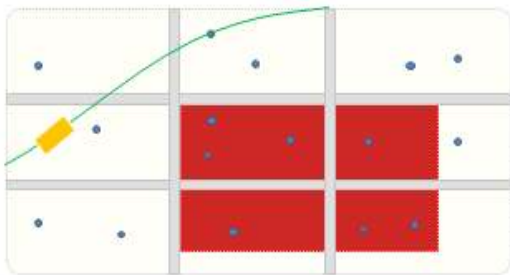
의한 예우 규정인 점 등을 반영하여 50% 감면 비율로 상향 조정한 것임.
→ 참전유공자 80% 감면: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부설주차장)
→ 병역명문가 50% 감면: 종로구, 도봉구

[붙임]

주차장 급지 변경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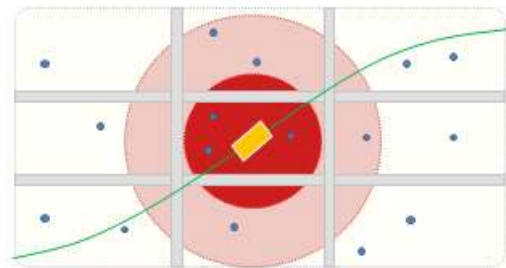
	급지	구 분
현행	1 급지	(1) 4대문 주변지역 일대 (2) 신촌지역 일대 (3) 영등포지역 일대 (4) 강남·서초지역 일대 (5) 잠실지역 일대 (6) 천호지역 일대 (7) 청량리지역 일대 (8) 용산·마포지역 일대 (9) 미아지역 일대 (10) 목동지역 일대
	2 급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급지	1·2·4·5 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4 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 중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5 급지	(1) 4 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4 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개정안	1급지	환승역 300m 이내 / 비 환승역 100m 이내 + 기존 1급지
	2급지	환승역 500m 이내 / 비 환승역 300m 이내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3급지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현행 급지체계



■ 1급지 ● 2~5급지 (입지특성기능관련 정책에 따라 결정)

개선안(개념도):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 지역단위 급지



■ 1급지 ■ 2급지 □ 3급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주차장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